

서울특별시 세입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51
----------	----

2002년 12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10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1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 10월 15일 상정) 및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 12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이철수)

가. 제안이유

- 시세 불납결손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채용 정수효과를 높이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주요내용

-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의2)
 - 시효소멸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 : 순징수액의 10/100
 - 시효소멸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 : 순징수액의 7/100
 - 시효소멸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 : 순징수액의 5/100

 검토요지

가. 연도별 시세 불납결손 현황

- '98년 306억 원, '99년 540억 원, 2000년 1,615억 원, 2001년 2,139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체납액은 1조 358억 원으로 2001년도 세입의 약 10%에 해당됨.
- 체납결손은 체납시세 중 현실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납세자와 체납자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징수하여야 하나, 부동산 또는 금융전산망을 통한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시효 소멸되어 왔던 것임.

나. 현행 조례상 포상금제도의 문제점

-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제도는 급여의 110%범위 내에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상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그 지급액에 한계가 있으므로

포상금보다는 실비적 성격이며, 또한 포상금액의 한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결과 2001년도 결손처분한 체납시세의 징수실적은 대상금액 4,808억 원 중 0.4%인 1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민간전문가인 비전임계약직 채용과 그 문제점

- 현행법상 체납시세 징수와 체납자 조사 등 조세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공무원 총정원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여 전임계약직의 기본급 50%로 하고 성과에 따라 실적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실적에 따라 한계 없이 성과금을 지급하므로 체납액 징수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비전임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이 아닌 업연히 공무원으로 실적에 따라 한계 없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 관계공무원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조세징수와 관련된 법률개정을 통하여 체납시세를 민간채권 추심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찬반표결 (찬성8, 반대2)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민간전문가를 비전임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98
----------	----

2002년 12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200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 12월 26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이철수)

가. 제안이유

- 정기 재물조사결과 불용품 중 활용가능품의 소요조회를 자체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